

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군포시의회 신경원 의원 등이 발의한 「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 조례안」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제1항 및 「군포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2월 9일

군 포 시 의 회 의 장

1.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: 첨부 조례안 참고

2.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

가. 제출기한 : 2023년 2월 13일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전자우편, FAX

다. 제출내용

1) 조례안에 대한 의견 (붙임 서식 참조)

2) 성명(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라. 제출기관 : 군포시의회 (참조: 의회사무과)

1) 주 소 :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

2) 전화번호 : 031-390-8739, FAX 031-392-4004

3) 전자우편 : js9695@korea.kr

붙임 1. 의견서 서식 1부.

2. 조례안 1부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 :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 조례안

(신경원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3. 2. .

발 의 자 : 신경원, 이길호, 김귀근,
신금자, 이우천, 이훈미,
이동한, 박상현, 이혜승

1. 제안이유

-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계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(안 제1조)
- 나. 지원대상자의 범위 (안 제2조)
- 다. 지원대상자의 조사·결정 (안 제3조)
- 라. 지원내용의 적정성 심의 (안 제4조)
- 마.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 (안 제5조)

3. 관련법령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, 「긴급복지지원법」

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원대상자의 범위)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포시에 거주하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주민
2. 질병, 노령, 장애, 방임, 유기, 학대, 화재, 실업, 사고, 사업실패 등 긴급복지 사유와 재난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
3. 그 밖에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 중 군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

제3조(지원대상자의 조사·결정) ① 시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주민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. 다만, 동장은 그 관할 지역 내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

천한다.

②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, 급여의 신청·결정·변경·중지, 현
장 확인 등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또는 「긴급복지지원법」을
준용한다.

제4조(지원내용의 적정성 심의)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의
하기 위하여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
법률」 제41조에 따른 군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
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5조(지원방법 및 지원내용) ① 지원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
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현금과 물품, 지역화폐 등을 지원할
수 있다.

②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항목으로
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이미 지원
을 받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
수 있다.

1. 생계비
2. 주거비
3. 의료비(본인부담금 포함)
4. 난방비(연료비, 가스비, 전기요금 등)
5. 장제비(무연고 수급자 중 장제급여 대상자에게 지급, 연고 있는
수급자 중 사체인수 거부자 포함)

6. 명절·연말·기념일의 위문금품(수급자 중 생계·의료급여 대상자에
게 지급)

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지원대상자 선정 등) 지원대상자 선정기준, 지원기간, 지원수준,
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되, 지원목적이 달
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